第 30 回達西區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附錄)** 第 2 號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事務課

목 차

1. 自治區間行政區域調整에따른建議(案) ····· 45 面
2.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49 面
3.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에서의證人等旅費支給에關한條例(案) ····· 59 面
4.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審査報告書 ····· 62 面
5. 大邱直轄市達西區廢棄物關聯過怠料賦課徵收業務에關한條例(案)審査報告書 ····· 70 面
6. 大邱直轄市達西區都市計劃委員會設置條例(案)審査報告書 ····· 76 面
7. 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審査報告書 ····· 78 面
8. 李鍾鶴議員質問에對한書面答辯書 ····· 83 面
9. 大邱直轄市達西區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酬案同義(案) ··· 85面
10. '93決算檢事指摘事項措置 ····· 87 面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건의(안)

의 안 번 호	94-37

발의년월일 : 1994. 10. 20.

발 의 자 : 김정해, 류광현 의원외 5명

1. 제안경위

○ 81.7.1 직할시 승격과 함께 성서읍을 서구로 편입했을 때와 88.1.1. 성서, 월배지역을 중심으로 달서구를 신설하였을때에 그 당시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조정없이 동간구간 경계로 사용함으로써 달서구(감삼동, 죽전동)와 서구(내당동, 중리동)간 경계지점에 위치한 다수가구 및 공장이 2개구에 걸쳐있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음.

○ 94.9.24 시의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94.10.7 주민 여론조사 결과 총 참여인원 1,327명중 반대가 812명(61.2%) 찬성이 515(38.8%)으로 나타나 대상지역 주민 50%이상이 서구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 94.10.11 주민 1,300명의 여론이 집약된 건의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이를 수렴하여서 주민 경계조정(안)대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건의코자 함.

2. 주요골자

○ 구간경계를 감삼네거리 - 당산로(중리여중진입로) - 죽전국교 - 대구의료원 앞 도로(평리로) → 죽전파출소앞네거리 - 용산택지개발지구경계를 기준으로 확정

3. 건의안 : 별첨

4. 관계도면 : 별첨

5. 구민건의서 서명부(달서구 죽전동 황상원외 1,299명) : 별도

(다음 페이지에 계속)

자치구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건의안

(달서구 감삼동·죽전동과 서구 내당동·중리동간 경계)

① 직할시 승격과 달서구 신설로 인하여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조정없이 동간 구간 경계로 사용하므로써 달서구(감삼동, 죽전동)와 서구(내당동, 중리동)간 경계지점에 아파트 단지 2개동 97가구, 단독주택 38가구, 서대구공단 11개업체와 상리공원등이 2개구에 걸쳐 있어 공단 공원관리 이원화와 시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구간 경계조정은 필요한 것임.

② 지난 94.9.24 대구시에서 대서로 - 죽전네거리 - 죽전파출소앞 네거리 - 용산택지개발지구경계를 기준으로 동·북편의 달서구지역을 서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여 94.10.7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총 참여인원 1,327명중 반대 812명(61.2%), 찬성 515명(38.8%)으로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므로써 무산됨.

③ 주민의 여론수렴과 면밀한 검토후 행정구역 조정을 하여야함에도 행정편의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하므로써 반대의견이 표출된 것임.

수백년 전통의 정서가 담긴 죽전동의 분할과 주민들간의 갈등의 조장 및 행정불신, 그리고 경제적손실등으로 시 조정안은 주민여론과 배치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대다수는 경계조정구역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주민의 정서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94.10.11 주민 1,300명 여론이 집약된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건의안을 제시하여옴에 따라 의회에서 이를 적극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경계조정안을 마련하였음.

〈조정안〉

감삼네거리 - 당산로(중리여중 진입로) - 죽전국교 - 대구의료원 앞 도로(평리동) - 죽전파출소앞 네거리 - 용산택지개발지구경계기준

※ 이는 지역주민 1,300여명 서명으로 제출된 건의서를 기초로 제출된 것이므로 관계기관에서 주민의 여론에 맞게 경계조정안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4년 10월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